

중소기업·소상공인 인공지능 전환 촉진법안

(오세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308
----------	-------

발의연월일 : 2025. 11. 17.

발 의 자 : 오세희·김병주·이훈기
박희승·전진숙·김태선
박균택·김남희·위성곤
윤종균·김우영 의원
(11인)

제안이유

우리 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디지털 전환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인공지능(AI) 도입률이 극히 저조하여 생산성 정체와 글로벌 경쟁력 약화라는 구조적 한계에 직면하고 있음. 또한 데이터 활용 기반 부족과 전문인력·자금 지원의 제약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기존 개별 정책만으로는 AI 전환(AX)을 통한 혁신 도약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본 법안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주도의 기본계획 수립 및 성과평가 체계 확립, 인공지능 전환 위원회 설치를 통한 정책 전문성과 일관성 확보, 업종·규모별 맞춤형 지원, 데이터 품질 향상·표준화 플랫폼 구축, AI 전문기업 육성, 규제배심원제 도입 등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혁신 역량과 시장 진출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이를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제고를 도모하고, 나아가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인공지능 기반으로의 전환을 체계적으로 촉진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인공지능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재정적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책무를 부여함(안 제3조).
- 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시행계획에 대한 추진실적과 성과를 평가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 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인공지능 전환 촉진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속으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인공지능 전환 위원회를 둠(안 제7조).
- 마.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업종·규모별 특성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공지능 전환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 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인공지능 전환을

위하여 데이터의 품질 향상, 표준화 등을 지원하는 플랫폼을 구축
·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인공지능 전환 촉진과 관련하여 규제
신설 또는 강화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도출을 위한 인공지능 규제
배심원제의 운영 규정을 마련함(안 제20조).

아. 인공지능 솔루션의 개발 및 제공 등 인공지능 전환 촉진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는 인공지능 전문기업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육성·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자. 시·도별 인공지능 전환 시행계획 및 시·도별 인공지능 혁신허브
등 시·도별 인공지능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함(안 제2
5조 및 제27조).

중소기업·소상공인 인공지능 전환 촉진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인공지능 기반으로의 전환을 체계적으로 촉진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2.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3. “데이터”란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데이터를 말한다.
4. “인공지능”이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공지능을 말한다.
5. “인공지능 솔루션”이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생산·서비스 등 사업 전반에 적용되는 인공지능 기술 기반의 시스템·소

소프트웨어·서비스 또는 플랫폼을 말한다.

6. “인공지능 전환”이란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이 생산·경영·서비스 등 전반적인 사업 활동에 인공지능을 도입·융합·활용하여 사업의 효율성 및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인공지능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재정적 기반을 마련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의 협력을 조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인공지능 전환 촉진을 위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국가 정책과의 정합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인공지능 전환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인공지능 전환 촉진에 관한 추진체계

제5조(기본계획)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3년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인공지능 전환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업종·분야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인공지능 전환 실태 및 수요 분석
 2. 특화 인공지능 모델·서비스 개발 및 창업 촉진 전략
 3. 데이터 확보·전환 및 규제 대응 방안
 4. 인프라·인력·금융·세제 지원 계획
 5. 지역 간 인공지능 전환 격차 해소 및 확산 기반 조성 방안
 6. 지식재산·데이터·영업비밀 보호 및 윤리·책임기반 운영 지원 방안
 7.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전환을 위한 가치체계 정립
 8. 그 밖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인공지능 전환 촉진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계획 및 성과평가)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인공지능 전환 촉진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추진실적과 성과를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인공지능 전환위원회) ① 중소기업 및 소

상공인의 인공지능 활용 촉진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속으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인공지능 전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민간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부·고용노동부·교육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2. 소상공인 및 중소벤처기업 관련 연구기관·산업계·전문가단체 등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2.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인공지능 전환 관련 관계 부처 간 협력·조정
3. 주요 정책·사업의 추진성과 평가
4. 그 밖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인공지능 활용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전담기관 지정 및 역할)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인공지능 전환 촉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전환 지원사업의 집행·관리·성과평가 및 사후관리
2. 인공지능 전환 지원을 위한 수요조사 및 정책자료 제공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과의 협력 및 연구성과 활용

③ 전담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평가, 지정 취소 및 그 밖에 전담기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인공지능 전환 촉진을 위하여 산업통상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민간단체 및 학계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중소기업 등을 위한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과 관련한 각종 지원시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인공지능 전환 관련 국가전략·안전·신뢰성 기준·윤리원칙·전문인력 양성정책 등을 연계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제10조 및 제16조에 따른 산업데이터 활용 촉진 및 선도사업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과 협력하여 디지털전환 촉진사업·디지털 전문기업 육성·공동활용 인프라 구축사업 등 인공지능 전환 촉진 정책을 연계하여야 한다.

④ 협력·조정에 관하여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인공지능 전환 지원체계

제10조(지원사업 절차)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인공지능 전환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자료를 활용한 업종·분야별 수요조사
2. 사업계획의 공고 및 신청접수
3.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심사·선정
4. 전담기관과 지원대상 간 협약 체결
5. 사업 수행 및 이행점검

6. 성과평가 및 결과공표

7. 사후관리 및 환수

② 지원사업 실시 절차에 관하여 평가위원회 구성, 협약 체결, 성과평가 및 사후관리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업종·분야 특화 인공지능 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업종별·규모별 특성을 고려한 인공지능 전환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이 포함된다.

1. 제조업, 서비스업, 유통업 등 주요 업종별 디지털 전환을 위한 인공지능 솔루션 개발 및 보급
2. 업종별 협회·단체 등과 협력하여 특화된 인공지능 기술의 공동 개발 및 확산
3. 업종별 특화 데이터의 수집, 가공 및 전환 지원
4. 그 밖에 인공지능 전환 촉진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 분야에 대하여 인공지능을 활용한 디지털 전환 촉진사업을 추진하거나, 기존 스마트공장 고도화 사업과 연계하여 인공지능 솔루션 도입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소상공인 맞춤형 인공지능 전환 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의 업종·경영환경·성장단계별 특성을 고려하여 맞춤

형 인공지능 솔루션의 개발·보급 및 현장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의 인공지능 기술 접근성을 높이고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통합지원 플랫폼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인공지능 전문인력 양성 및 연계)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인공지능 전환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직자 및 신규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인공지능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등과 연계하여 업종·분야별 특화된 인공지능 융합인력 양성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양성된 전문인력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연계·파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파견인력의 인건비·교육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재직자에 대하여 직무전환 및 고급역량 강화를 위한 장기 교육훈련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절차 및 지원범위 등 인공지능 전문인력 양성 및 연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인공지능 인력지원 체계)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인공지능 인력수요 충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별 인공지능 인력 수요조사 및 인력 매칭 플랫폼 구축
 2. 인공지능 전문인력 채용 시 인건비·사회보험료 등 인건비 일부 지원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시 세제 혜택 등 인력 유치 촉진
 4. 청년·경력전환자 대상 중소기업 취업연계 프로그램 운영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우수 인력을 안정적으로 고용·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방자치단체, 대학 및 민간기관 등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④ 지원기준·지원범위·절차 및 위탁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금융·세제·투자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인공지능 도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금융지원을 할 수 있다.

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

흥기금,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
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을 통한 정책자금 융자

2. 금융기관의 인공지능 전환 전용 특례보증·금리우대 상품 개발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인공지능 도입·
전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세제지원을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할 수 있다.

1. 인공지능 관련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2. 인공지능 설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3. 인공지능 솔루션 도입 및 전환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4. 인공지능 전문인력 채용에 대한 인건비 세액공제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인공지능 분야 중소기업·스타트업에 대
한 모태펀드 출자, 전용펀드 조성, 민간투자 연계 등의 투자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지원기준·지원범위·절차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오픈소스 기반 협력 촉진)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인공지능
기술정보를 공개·공유하는 기업 또는 스타트업에 대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사업 선정 시 우대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개방형 인공지능 협력 생태계 조성을 위
하여 인프라, 교육 및 네트워크 구축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

며, 그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데이터 확보·활용 지원) ① 중소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인공지능 전환을 위하여 데이터의 품질 향상·가공·표준화 및 거래·유통을 지원하는 플랫폼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부장관은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하여 데이터의 비식별화, 익명화, 암호화 등 기술적·관리적 보호 조치에 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지원범위·절차·보상기준 및 플랫폼 구축·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데이터 관련 특례 등) 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인공지능 학습에 데이터를 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필요한 범위에서 데이터를 복제·전송할 수 있다.

1. 해당 데이터에 적법하게 접근하는 경우
2.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결과물의 생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소기업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로 정하는 학습과정의 조치를 취하는 경우
3. 학습에 이용된 데이터에 관한 활용내역 등을 중소기업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작성하고 공개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데이터를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공인은 필요한 한도 안에서 복제물을 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저작권법」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복제방지조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데이터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데이터 활용에 관한 기술지침의 마련
2. 인공지능 전환 등에 관한 법률·기술 지원 및 교육
3. 산업별·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표준계약서 및 전환 가이드라인

제19조(규제 대응 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인공지능 기술을 전환하는 과정에서 기존 법령에 따른 규제로 인해 사업 시행이 어려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규제 특례를 신속하게 신청·지원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과 관련하여 규제특례 신청·협의·심의에 필요한 자문을 제공하고 부처 간 협력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규제특례 신청·협의·심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인공지능 규제배심원제 운영 등) 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인공지능 전환 촉진과 관련하여 규제가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경우 이에 대한 국민의 의견 수렴과 사회적 합의의 도출을 위하여 중소

벤처기업부장관은 규제배심원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규제배심원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쟁점이 되는 규제안의 선정 및 사전 정보 공개
2. 공론화를 위한 토론 실시
3. 토론 결과 공표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의 절차를 통하여 수렴된 의견을 검토하여 규제안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공고하고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규제배심원제의 운영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인공지능 인프라 및 플랫폼 구축)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 인공지능 플랫폼 및 데이터 인프라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공지능 인프라 및 플랫폼의 구축·운영 기준, 이용대상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인공지능 전환 지원 체계

제22조(인공지능 전문기업의 육성 및 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인공지능 전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

의 역할을 전문으로 하는 인공지능 전문기업을 육성·지원할 수 있다.

1. 업종·분야 특화 인공지능 솔루션의 개발 및 제공
2.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생산·서비스 등에 대한 인공지능 적용 컨설팅 및 기술지원
3. 인공지능 전환을 위한 데이터 수집·가공·분석 및 플랫폼 구축
4. 인공지능 전환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파견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인공지능 전문기업을 지정·평가·관리할 수 있으며, 지정취소 또는 시정명령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정된 인공지능 전문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연구개발비, 설비투자비 등 재정지원
2. 기술보증 및 정책자금 융자
3. 판로개척 및 해외진출 지원
4. 세제감면 및 공공조달 참여 우대

④ 인공지능 전문기업은 이 법에 따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현장 수요를 반영하고 사업성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보고된 내용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시

정명령 또는 지원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⑥ 인공지능 전문기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인공지능 기반 창업 및 사업화 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인공지능 전환에 기여할 수 있는 상품을 기반으로 창업하는 벤처기업 등을 육성·지원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창업자금 및 초기운영자금 지원
2. 인공지능 기술의 실증 및 상용화를 위한 테스트베드 제공
3.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과의 매칭·공동사업화 지원
4. 판로개척 및 해외진출 지원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업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벤처기업 또는 창업기업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지원대상·지원범위·절차·평가 및 사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의무 등) ① 이 법에 따라 인공지능 전환 등에 관하여 지원을 받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지원사업에 참여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제출 및 협약 체결

2. 성과지표 및 이행계획 수립·이행
 3. 사업비 집행 및 정산
 4. 성과평가 및 사후관리 협조
 5. 지원사업으로 취득한 기술·데이터·영업비밀 등 사업 관련 정보
에 대한 보안 유지
- ②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지원사업으로 취득한 지식재산·데이터·성과 등을 무단으로 양도·유출하거나 부정하게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장 시·도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인공지능 전환 확산 체계

- 제25조(시·도별 인공지능 활용 시행계획)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시·도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인공지능 전환 촉진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도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시·도지사는 시·도별 시행계획을 수립·변경한 때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출받은 시·도별 시행계획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시·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시·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제출·평가·보완요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시·도별 특화산업과의 융합·협력)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시·도별 주력·특화산업과 인공지능의 융합모델 개발 및 사업화를 시·도지사와 협력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각 시·도 내의 대기업·중견기업과 인공지능 전문기업·중소기업·소상공인 간 공동기술개발 및 인공지능 솔루션 도입·실증 사업을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협력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③ 지원범위·절차·인센티브 부여기준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시·도별 인공지능 혁신허브 지정 및 특례)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시·도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인공지능 전환 역량 제고를 위하여 조직·인력·시설·기능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시·도별 인공지능 혁신허브(이하 “혁신허브”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혁신허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상 인공지능 교육·컨설팅
2. 인공지능 전문가 육성 및 파견

3. 인공지능 솔루션 테스트베드 구축 및 실증 지원
 4. 인공지능 전환 기업에 대한 입주·보육·사업화 지원
 5. 인공지능 기술 동향 및 법률·규제 정보 제공
 6. 인공지능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자 매칭 및 금융 지원 연계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혁신허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항에 따른 업무 수행 부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④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또는 시정명령의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8조, 제10조,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에도 불구하고 혁신허브에 입주한 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 발급의 절차와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병역법」 제37조 및 제38조제1항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편입 시 혁신허브에 입주한 기업에 우선 배정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28조(지식재산·데이터·영업비밀 보호)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인공지능 기술을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데이터·영업비밀의 침해를 예방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추진하여야 한다.

1. 데이터 저작권, 기술 오용 방지, 영업비밀 유출 방지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 및 표준계약서 마련·보급
2. 지식재산·데이터 보호 관련 교육·상담 및 법률지원 제공
3. 침해사고 발생 시 신고·조사 및 구제 지원체계 구축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보호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식재산처,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등 관계 기관·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의 범위·절차 및 협력체계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성과평가 및 결과공표)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지원사업의 추진실적 및 성과를 매년 평가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공표하고 다음 연도의 지원정책 및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평가를 위하여 전담기관 또는 전문평가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지표·절차 및 결과공표

방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보고 및 자료제출)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인공지능 전환 촉진 및 지원 사업이 적정하게 수행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지사, 전담기관의 장, 혁신허브 입주기업 및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그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제출자료를 검토한 결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인공지능 전환 촉진 및 지원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 전담기관의 장, 혁신허브 입주기업 및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 또는 제도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보고 및 자료제출,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또는 제도 개선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적극행정 면책 특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이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원법」 제34조의3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라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제32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33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형법」 제127조 및 제129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8조에 따른 전담기관의 임직원
2. 제20조에 따른 규제배심원
3. 제27조에 따른 혁신허브 참여 기업, 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

제7장 벌칙

제3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8조제2항에 따른 복제방지조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시행하지 아니한 자
2. 제24조제2항을 위반한 자

②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관할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